**이사회운영규정**

2021년 5월 12일 제정

2021년 11월 16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이더블유신약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한다) 이사회 (이하 '이사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 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 정한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이 규정 제11조에 열거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이 규정에서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지 않은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제4조(의무)** ①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 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재임중 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회내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 할 수 있으나, 다만

감사위원회 결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결의할 수 없다.

**제 2 장 구 성**

**제5조(구성)** 이사회는 주주총회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사내이사 에게 의장직무 대행을 시킬 수 있다.

②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7조(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총4회 이상 본사에서 개최한다. 단, 필요한 경우 개최시기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8조(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형사책임에 관한 사항

2. 고의 또는 과실로 현저하게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고에 관한 사항

3. 기타 긴급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소집절차)** ① 의장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회의 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 전원의 사전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 및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영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승인

3. 정관의 변경

4. 자본의 감소

5.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해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회사의 계속등

6.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

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7.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8. 이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9.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0.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11. 현금, 주식, 현물배당 결정

1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3. 이사의 보수

14. 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5. 법정준비금의 감액

16.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2. 신규사업의 개시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4. 공동대표의 결정

5. 이익 및 결손의 처분

6.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7. 임원의 퇴직공로금 또는 퇴직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지배인 및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등

9. 지점, 공장, 사무소, 사업장의 설치, 이전 또는 폐지

10. 기타법령 또는 정관에 정한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재무의 관한 사항

1.투자에 관한 사항

2.중요한 계약의 체결

3.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4.결손의 처분

5.중요시설의 신설 및 개폐

6.신주의 발행

7.사채의 발행 또는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의 위임

8.준비금의 자본전입

9.전환사채의 발행

10.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11.대규모의 자금도입 및 보증행위

12.중요한 재산에 대한 저당권, 질권의 설정

13.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4.자기주식의 소각

(4) 기 타

1.중요한 소송의 제기

2.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5.내부회계관리규정의 세부적인 사항 등에 대한 대표이사 위임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회사(대표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및 보고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1.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위원회는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임)**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관계인의 의견 청취)** 이사회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5 조(이사에 대한 직무집행감독권)** ① 이사회는 각 이사가 담당업무를 집행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처리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 조사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사회는 해당 업무에 대하여 그 집행을 중지 또는 변경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심의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17조(여비교통비)** 이사회에 참석한 비상근 이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가 별도로 정하 는 액수의 여비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간사)** ① 이사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경영기획 담당임원이 되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단, 의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이 가능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